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도봉구 제2선거구 홍국표 의원입니다.

- 제336회 정례회에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본 의원은 자치구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서울 전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강 이북 동북권·서북권 등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역의 시민들이 일자리와 투자 기회로부터 소외되어 성장의 파급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모두 자치구 간 격차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2019년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5년 단위의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자치구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왔으나, 격차 해소는 도시발전의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쉽게 해결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 서울시 자치구 간 격차는 단순한 시장 경쟁의 결과가 아니라, 산업 입지 규제, 공공투자 우선순위, 교통망 구축 방향 등 제도적·정책적 요인이 장기간 누적되어 형성된 경로의존적 결과입니다. 지역 격차의 가장 큰 원인은 이른바 산업생태계, 즉 일자리와 투자가 특정 지역에 쏠려있기 때문입니다.
- 한강을 경계로 한강 이남에는 기업 본사·금융·IT·첨단 클러스터가 집적된 반면, 한강 이북은 주거 중심 구조와 제한적 산업 기반으로 성장의 과급효과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경제 구조의 비대칭화는 권역별 경쟁력 격차의 구조적 확대를 낳아, 서울 전체의 성장 잠재력과 지속가능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체계적인 대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이번 개정안은 현행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수립 체계에 더해, 시장이 계

획 수립 시 지역간 격차의 실태와 그 해소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그 원칙을 명문화하고, 지역 격차 해소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투자’ 분야가 분야별 추진전략에 명시적으로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 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제5조 제1항에서 계획 수립 목적 조항을 정비하여 균형발전 정책의 본래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였고,
- 제5조 제2항을 신설하여 시장이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역간 격차의 실태와 그 해소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 또한 제5조 제3항 제3호 나목에서 분야별 추진전략 중 “산업·경제 활성화”를 “산업·경제·일자리·투자”로 개정하여, 지역 격차 해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가 균형발전계획에 명시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개정안의 본문부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자치구 간 격차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은 서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역의 시민들이 일자리와 투자의 혜택을 균형 있게 누리고, 서울 전역이 함께 발전하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